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2017.07)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장(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학점,성적,수료), 제4장(등록, 휴학, 복학, 재입학) 및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학위과정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① 정규등록은 석사·박사학위과정의 각각 최소 4학기로 한다.
-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의 수료와 동시에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은 6회를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자가 제2항의 연구등록 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하고, 차후 재입학시(대학원 학칙 제17조(재입학) 준용)에는 재입학 당시의 입학금과 제2항에 준하는 연구등록금에서 기납부분을 차감한 횟수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등록자의 권한)

- ① 정규등록자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② 연구등록자 및 연구등록완료수료자는 각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5조 (수료의 요건)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27조(과정 이수학점)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제6조 (수료자의 등록 및 휴학)

- 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졸업연한 내 휴학 횟수 내에서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과정별 연구등록 최종등록 직전학기까지 가능하다.
- ② 연구등록자의 휴학은 학칙 제21조(휴학)를 적용한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은 제외한다.
- ③ 삭제

제7조 (수료자의 복학)

연구등록자의 복학 시기 및 절차는 대학원 학칙 제22조(전과,복학 및자퇴)를 준용한다.

제8조 (수료자의 관리)

수료자의 관리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칙 및 제반규정과 내규를 적용한다.

제9조 (수료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 ① 수료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 학칙 제46조(학위수여)에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 (준용)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2001.10.8)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학 또는 휴학중인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5학기이상 정규등록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이 변경 내규는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 제2조 ③항)
4. 이 변경 내규는 2013학년도 전기 석사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변경조항 : 제2조 ②, ③항, 제 6조 ①,③항)
5. 이 변경 내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2조 ②, ③항, 제3조, 제4조 ②항, 제6조 ①,③항, 제9조 ②항)